

2017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NCS 교과목·사회맞춤형 운영 지침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육과정 편성지침

-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교양, 직업기초능력, 전공, NCS 운영 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지침입니다.

1. 직무(전공)별 교육과정 편성

교양 교과			NCS 기반 (전공) 교과			
기초 학습	직업기초 능력	전공 교양	계열 공통	창의 (창업)	전공일반 (전공기초)	NCS 기반 전공 직무 (전공심화 및 심화실습)

① 교육과정 편성 원칙

- ① 대학특성화 및 학과 인력양성유형에 따른 NCS 기반 직무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② 전공과목은 한 학기 단위로 이수토록 2학점 이상으로 편성
- ③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편성기준은 교양과목 10~20%, 전공과목 90~80% 내외 편성
- ④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의 편성기준은 이론과목 40%, 실습과목 60% 내외 편성

- ⑤ 교과목별 학기 내 1학점당 1시간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NCS 교과목과 사회맞춤형반 개설교과목의 경우 1학점당 1.5시간 이내로 함
- ⑥ 과목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학기제 현장실습 등 실습 교과목일 경우 4학점을 초과 할 수 있음
- ⑦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1과목 이상 반드시 온라인 강좌 개설·운영
- ⑧ 학과별 교육과정 필수 편성 교과목
 - 인성 및 봉사 : 1학년 1, 2학기 편성, 2학년 선택
 - 외국어 교육 : 학과별 자율적 편성
 -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 ▶ 최소 2개 영역 이상, 4학점 이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 창의 및 창업교육 교과목은 2학년 2학기는 배제를 원칙함

구분	창의 교과목		창업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공학계열	캡스톤디자인, 창의 관련 교과목	3학점 이상	창업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인문사회계열	캡스톤디자인, 창의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창업 관련 교과목	3학점 이상	

- 계열공통 특성화 교과목 :
 - ▶ 해양플랜트융합계열 : CAD 및 설계 관련 1개 교과목 이상 편성
 - ▶ 해양관광계열 : 해양안전 관련 1개 교과목 이상 편성

② 개설교과 세부 내용

- ① 한 학기당 수강학점 및 시수
 - 수강학점 : 15학점 이상 최대 24학점 이내
 - 주당시수 : 24시간 이내
 - 학점당 시수 : 1학점당 1시간(주당)
 - 단, NCS교과목,사회맞춤형반 개설 교과목일 경우 1학점당 1.5시간 이내
- ② 현장실습 개설 의무화
 -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현장실무중심 교육 실현을 위함

③ 수강 학생수

- ① 수강인원 :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수강인원)
 - 시간당 수강인원의 단위 : 20명 기준
 - 1개 합반 초과인원 10명 : 학반 편성규정 제2조(학반 편성단위)
⇒ 30명 이상일 경우 분반 가능
- ② 선택과목의 폐강 :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선택과목의 폐강)
 - 수강자 수가 10명 미만인 선택과목은 폐강
⇒ 수강자 수 기준일자 : 수강신청 변경기간 (개강 후 일주일 이내)
단, 재학생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직업기초 교과목 원격강좌 운영

- ① 학점인정 : 강좌당 1학점(주당 1시간 인정)
- ② 운영방법 : 1개 교과목 이상 반드시 원격강좌 개설·운영
- ③ 담당교수 :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전임교원
- ④ 운영방안
 - 담당교수는 책임시수에 원격강좌 시수 포함(단, 강사료 없음)
 - 출석, 시험 및 Q&A 등 관리

⑤ 기초학습 교과목 운영

- ① 개설학기 : 1학년 1학기 [기 추진]
- ② 개설학점 : 과목당 1학점
- ③ 운영 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중 2과목 이상
- ④ 운영방법 : 기초학습능력 평가 결과
 - 중·상위 : On-Line 강좌 개설·운영
 - 하위 : Off-Line 강좌 개설·운영

경남도립남해대학 NCS 기반 교과목 운영 지침

-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현장실무 중심의 NCS 기반 교과목 운영을 위한 NCS 기반 교과목 운영 지침입니다.

1 NCS 적용 교과목 인정

- 가. ‘NCS 적용 교과목’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
- 나. ‘NCS 학습모듈’ :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
- 다. NCS 적용 교과목 인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교과목명세서,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직무능력평가서, 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를 갖춘 교과목
 - ② NCS 학습모듈이 개발된 경우 주교재로 활용한 교과목(단, NCS 학습모듈이 미개발된 경우는 유사교재나 교수학습지침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NCS 기반 교과목 중 향상/심화 교육을 실시한 교과목
 - ④ 학기말 NCS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교과목

② 직무능력수행평가

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직무수행능력)를 학습자가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

- ①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 ② 평가의 내용은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를 중심으로 평가
- ③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
- ④ 매학기 성적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과목별로 출석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산출

③ 향상교육

가. ‘향상교육’ : NCS 교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질 관리를 위한 정규/비정규 향상교육프로그램

- ① 교육대상은 NCS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 후 성취수준 1-2수준이며,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3수준의 학생도 교육할 수 있음
- ② 향상교육은 학기당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 ③ 향상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가산점 부여는 성적 산출시 종합평가점수와 성취수준 판정에 반영할 수 있음
- ④ 매학기 NCS지원센터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⑤ 향상교육 실시 후 7일 이내에 계획서 및 결과서를 NCS지원센터로 제출

④ 심화교육

가. ‘심화교육’ : NCS 교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위한 정규/비정규 전공심화(실무) 교육 프로그램

- ① 교육대상은 직무능력평가 후 성취수준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성취수준 1-2수준도 교육에 참가할 수 있음
- ② 심화교육은 NCS 교과목, 인력양성유형에 따라 해당 교수가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산업현장으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지원할 수 있음(단, 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 ③ 전체 수강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분반할 수 있음
- ④ 인재양성목표를 위한 심화교육일 경우 교과목에 관계없이 학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⑤ 매학기 NCS지원센터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단, 학과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⑥ 심화교육 실시 전후 7일 이내에 계획서 및 결과서 NCS지원센터로 제출

㉕ 외부인사 활용

가. 외부인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

- ① NCS 기반 교과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 인사
- ② NCS 기반 교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명사, 명장, 기능장, 실무전문가, 장비전문가, 직업교육전문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③ 교과목의 내용 중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전문가

나. ‘외부인사 활용’ : 산업체 현장감각 및 숙련 기술 습득을 위하여 NCS 교과목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명장, 기능장 및 기타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

- ① 외부인사 활용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 ② 학과별 수요조사 후 NCS지원센터에서 총괄계획 수립 후 실시
- ③ NCS-Day, NCS 박람회 등 특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필요 시 관련 교과목을 교육할 수 있음
- ④ 외부인사의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규강좌 혹은 비정규 프로그램 특강
 - 실무사례, 장비사용법, 트렌드, 실무 노하우 등 수업 일부과정
 - 외부인사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 비정규 향상/심화과정

경남도립남해대학 NCS-day 운영 지침

-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NCS 기반 특정 직무를 대학 전체 강좌로 개설하여 NCS 직무단위 이수 여건 마련 및 전공 부적응에 의한 중도 탈락 예방 효과 마련을 위한 NCS-day 운영지침입니다.

① 운영방침

- 개설학점 : 2학점 2시간(주당)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 NCS-day 담당교수 교과목이 30명 이상 분반으로 운영시 초과시수 인정
 - 운영요일 : 매주 수요일 14:00 ~ 18:00
 - 운영과목 : NCS 기반 1개 교과목(학과당 1개 교과목)
 - 교육대상 : 1학년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수강신청 : 반드시 타 학과 학생 수강신청

② 교육과정 개설

- 학과 고유 직무 중 타 학과 학생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특정 직무를 선택하여 전 학과에서 1개 과정 이상 개설
 - NCS 활용패키지 훈련시간 기준을 참고하여 60시간 내외의 직무를 선정함을 원칙
 - 한 학기 동안에 이수 가능하도록 구성
 - 해당학과 교과목과 동일한 직무로 교과목 개설 가능
 - 학기 내 이수 및 심화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 예) 카지노운영관리 60시간 필요의 경우 2학점 2시간
 - 2시간 × 15주 = 30시간, 심화교육 30시간
 - 수강신청 학생이 30명을 넘는 경우 분반으로 운영가능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사회맞춤형 장기발전계획’의 교육목표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약 산업체로부터 교육 내용, 소요 인력 등을 주문받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선발 계획) 공동선발 계획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① 학교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학생에게 공지 및 안내
- ② 교육과정 실무위원회 위원 중 면접위원 구성
- ③ 참여기업 약정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선발
- ④ 교육인원이 30명 이상이면 분반하여 운영한다.

제3조(공동선발) 공동선발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실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선발한다.

- ① 면접평가표에 의한 면접점수 순위별 우수 학생
- ② 학과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전담교원 추천

제4조(교재개발) 교재개발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편성 및 운영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위촉된 교육과정 실무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여 개발한다. 교재개발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참여산업체 요구직무에 대한 분석 및 참여 산업체의 매뉴얼 참고
- ② 교육과정표에 제시된 교과목 중 교재개발이 필요한 교과목
- ③ 교수학습방법,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
- ④ 교재개발 시 비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① 공동선발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② 교육과정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에 따라 1학년부터 개설 가능하며, 정규교육과정 및 비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2학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등으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개설 운영한다.

- ④ 정규교육과정 교과목 운영에 있어 개별과목, 선택과목 등은 수강인원이 학기 초 최소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10명 이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⑤ 비정규 교육과정은 학기 중, 방학 등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후 실시한다.

제6조(모듈식 교육과정 운영) 사회맞춤형 교과목 중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집중실습, 현장교육, 현장실무 등이 필요한 교과목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점 및 시수를 고려하여 한 학기 당 15주에 해당하는 시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예, 1학점 1.5시간 교과목 총 22.5시간 이내 교육).
- ②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교육도 가능하나 계획수립 시 참여 학생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지침에 따른다.
- ④ 학점에 따른 점수에 관한 Pass/Fail 또는 A, B, C 사항은 사전에 교무부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⑤ 학점이 부여되는 모듈식 교과목은 반드시 담당교수를 선임하고 개강준비 등에 학점, 시수, 담당교수 등을 표기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사회맞춤형 교과목 중 NCS 적용교과목과 현장중심교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 ①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 ② 평가의 내용은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③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 ④ 성적평가 기준에 의거 과목별로 출석,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제8조(사회맞춤형 향상/심화교육) 사회맞춤형 향상/심화교육은 사회맞춤형 교과목 중 NCS 적용교과목과 현장중심교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내용은 NCS 기반 교과목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사회맞춤형 외부인사활용교육) 사회맞춤형 외부인사활용교육은 반드시 승인된 참여기업의 인사로만 제한하여 운영한다.

제10조(준용)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도(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사회맞춤형 장기발전계획’의 교육목표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편성)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준용하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할 수 있다.

- ①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참여기업 직무를 교육과정 편성
- ② 전공과목은 한 학기 단위로 1학점~6학점 등으로 자율적으로 편성
- ③ 교양과목, 전공과목, 이론과목, 실습과목 등 자율적으로 편성
- ④ 캡스톤디자인, 창업, 창의 관련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 편성
- ⑤ 현장실습(계절제, 학기제)은 반드시 편성
- ⑥ 진로탐색, 경력개발 관련교과목은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 편성

제3조(수강학점 및 시수) ①한 학기당 수강학점은 최소 15학점 이상,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

- ② 주당 시수는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③ NCS 기반 교과목, 현장중심교과목의 시수는 학점 당 1.5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 ⑤ 기타 교과목의 시수는 학점당 1시간으로 편성한다.
- ④ 현장실습(계절제, 학기제)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대학의 현장실습 학점부여에 관한 내용을 준수한다.

제4조(모듈식 교과목 편성) NCS 기반 및 현장중심교과목 중 모듈식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반드시 교육과정표에 모듈식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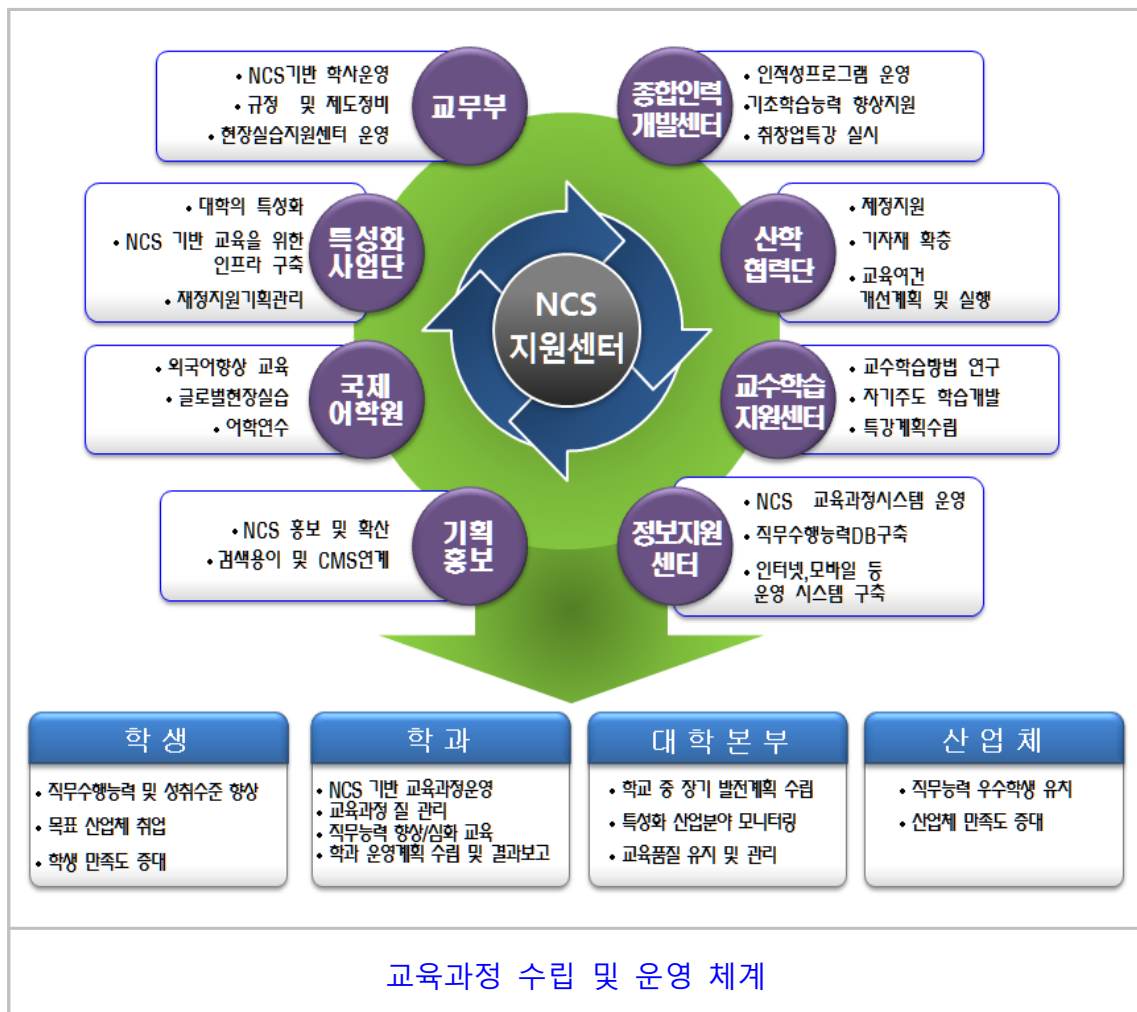
제5조(사회맞춤형사업단 교과목 편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맞춤형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공통 교과목으로 학기당 2개 교과목 이내에서 편성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도(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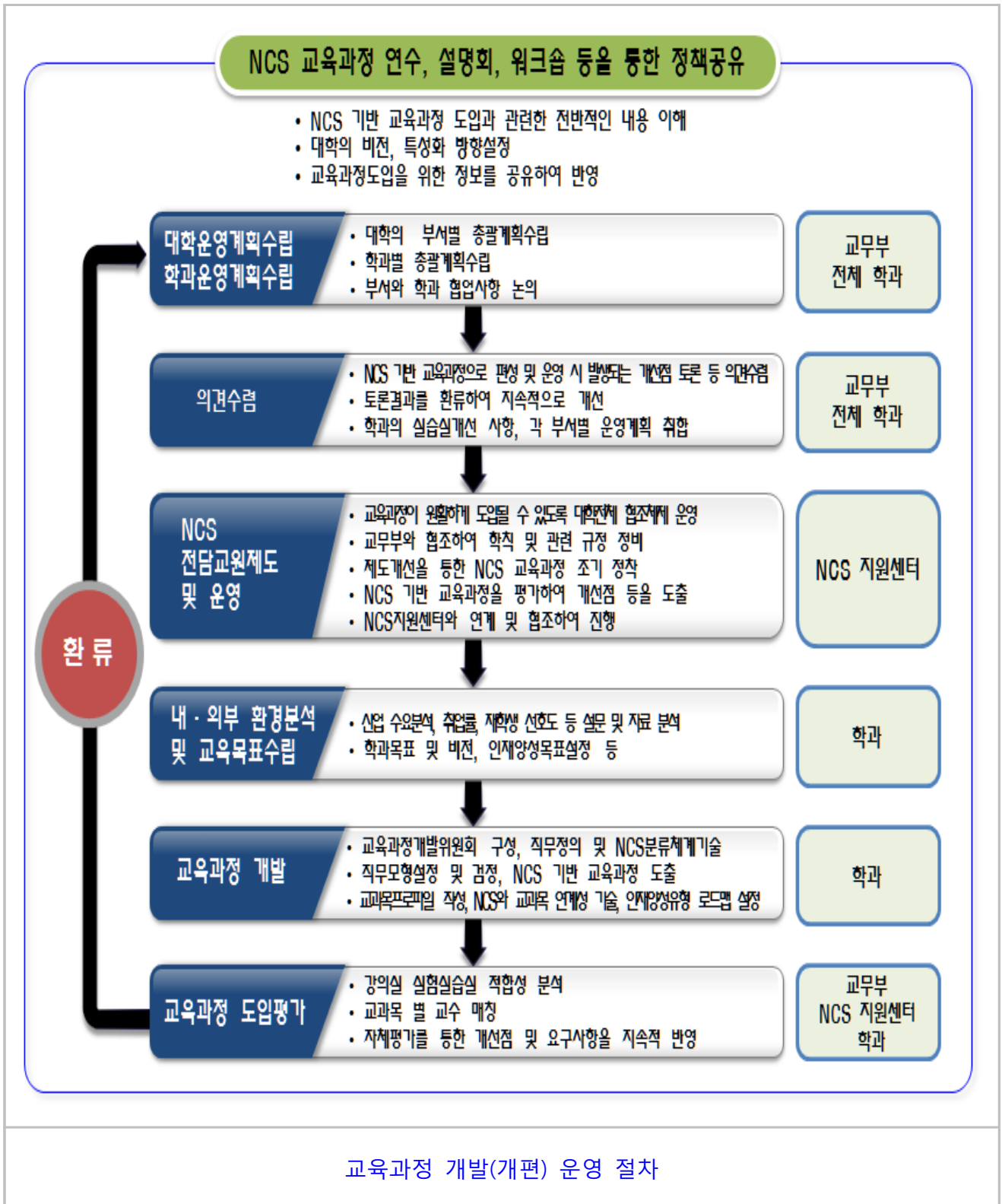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육과정 개발(개편)지침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과별 인력양성 목표에 따른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산업체 요구수준 및 학위수준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침입니다.

①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체계



② 교육과정 개발(개편) 운영 절차



③ 교육과정개발 추진내용 및 절차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개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사회맞춤형 장기발전계획’의 교육목표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란 사회맞춤형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총괄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① “사회맞춤형 교과목”이란 참여기업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교육내용에 NCS 표준의 능력단위(요소)를 적어도 하나라도 포함하면 NCS 기반 교과목으로 분류하고, 자체적으로 참여기업의 직무내용만으로 구성되면 현장중심교과목으로 분류한다.

② “NCS 기반 교과목”이란 개발된 NCS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현장중심 교과목”이란 참여기업의 직무를 분석하여 자체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④ “자체능력단위”란 교육과정 실무위원회 회의 또는 참여기업 인사와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능력단위를 말한다.

⑤ “NCS 기반 교과목 및 현장중심 제외 교과목”이란 “NCS 기반 교과목” 및 “현장중심 교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의미하며 참여기업의 직무를 교육한다고 할지라도 “자체능력단위(요소)”가 없는 교과목은 “현장중심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제3조(교육과정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사회맞춤형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 교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사회맞춤형 사업단장은 전반적인 사항 전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 구성은 반드시 승인된 참여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은 사회맞춤형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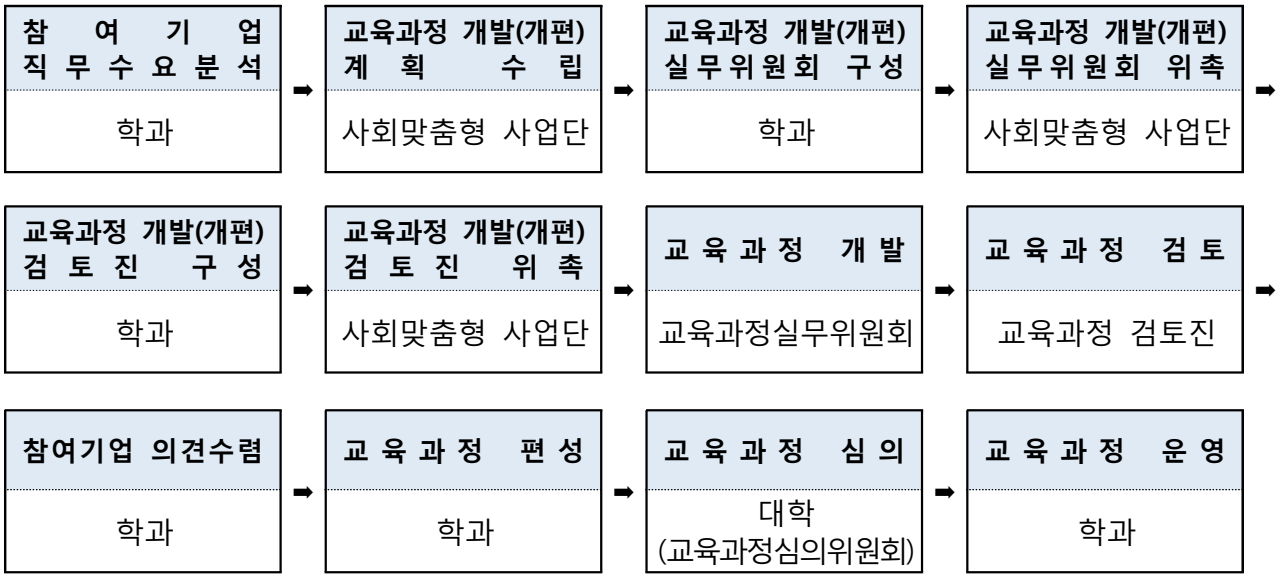
1. 참여기업 산업체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의 요청 시 참여 및 학생지도가 가능한 사람
 3.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4.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교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사람
- 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향후 사회맞춤형 참여기업으로 협약이 가능한 산업체 인사
 2.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협회의 회원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교원의 추천으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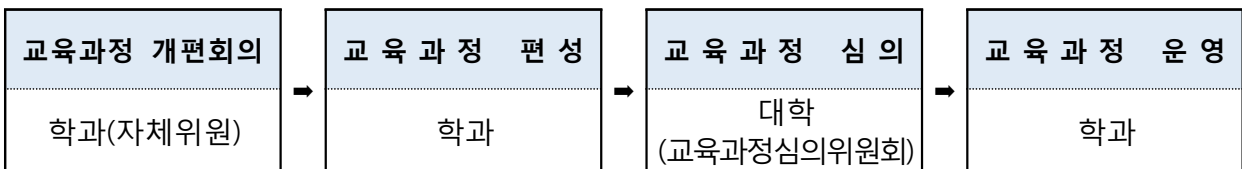
제4조(교육과정 개발절차) 교육과정개발 절차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에 따라 NCS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기본절차

1 단계	협약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내용 파악 - 훈련과정에 필요로 하는 직무분석 - 기업의 인재상, 지식, 기술 종합검토
		↓
2 단계	학교 및 학과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 부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현 교육과정 비교 분석 - 교육여건, 별도반 구성, 훈련과정 시간 등 종합적인 검토 - 교육 후 취업 지속가능성, 학생 선호도 조사하여 가부 결정
		↓
3 단계	협약기업 해당교수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개발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개발(실무)위원회 구성 : 기업체인사 및 해당 교수 - 장비 및 도구, 실습실 환경 조사 등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토론 - 요구직무에 대한 자격증, 기술, 지식 등 검토
		↓
4 단계	협약기업 해당교수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 도출 - 교육방법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학교육, 기업체 현장교육 등 교육시간 확정
		↓
5 단계	학교 및 학과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기업체 인사 공동교육방안 모색 - 해당교수 기업체 연수 및 직무에 대한 숙련도 강화

② 교육과정 개발 업무분장



제5조(교육과정 개편절차)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개발 및 편성된 교육과정을 운영 후 3개 이하 교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실무위원회 및 검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자체 위원을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나 반드시 대학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교과목의 명칭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3개 이상 교과목이 변경되더라도 개편으로 간주한다.



제6조(교육과정 검토위원회) ①위원회는 사회맞춤형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 교원 또는 학과 전임교수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사회맞춤형 사업단장은 전반적인 사항 전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담교원 또는 학과 전임교수, 산업체 인사,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된 협회, 참여기업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은 사회맞춤형 계열 및 학과 트랙(반)의 전담교원 또는 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자체 선임 한다.

④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된 직무의 기술사, 기능장 등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직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의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협회의 회원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계열 및 학과 트랙(반)과 관련 직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참여기업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운영, 자체평가 등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
7.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의결) 개발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도(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 붙임**
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실무)위원회 운영지침 1부
 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운영지침 1부. 끝.